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82호

2025년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및 제조데이터 컨설팅 공고

제조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사업 및 제조데이터 컨설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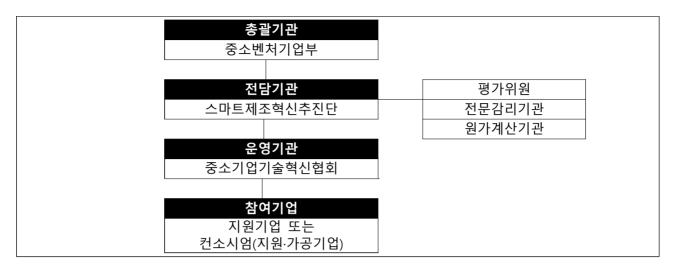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상품가공) 제조데이터 상품화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제조데이터 컨설팅) 제조데이터 수집·관리체계, 거래시스템 사용 등 디지털 자산인 제조데이터의 상품화를 위한 기본 교육, 컨설팅 제공
□ 지원근거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 지원대상 :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규모
○ (상품가공) 12.5억원(기업당 최대 0.5억원), 25개 내외 지원(부가세 별도)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최대)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제조데이터 상품가공지원	4개월	0.5억원	80% 이내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현금부담)

- * 지원금액은 원가계산 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2025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지원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 컨설팅 필수 지원
- (제조데이터 컨설팅) 1.25억원(기업당 최대 5백만원), 25개 내외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최대)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제조데이터 컨설팅	2개월	5백만원 (컨설팅 지원)	100%	-

□ 추진체계



2. 지원내용

Ⅱ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을 통한 상품화 지원

< 제조데이터 가공 및 상품 제작 절차(안) >



- (가공 지원) 제조데이터의 개념화, 분석 및 분류, 전처리* 등 빅데이터·AI 기반 제조데이터 가공서비스 제공
- * 제조데이터의 전처리의 경우, CDD, eCl@ss 등을 활용하여 속성값 표준화 필수
- (품질검증지원)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프로세스 지원
- (상품등록지원)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 내 등록을 위한 가격산정 및 상품등록 지원
- *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내「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mdata.kamp-ai.kr)

- (AAS 표준교육) 제조데이터 상품가공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또는 컨소시엄(제조기업·가공기업)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AAS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 * www.kosmocampus.com를 통해 제조데이터 AAS교육프로그램 운영 中
- (컨설팅 연계지원) 데이터 상품의 품질검사 및 이익 배분 가이드, 계약 체결 등 컨설팅 필수 연계 지원(사업계획서 내 컨설팅 신청서 작성 필수)

<예시: 제조데이터 상품 구분 및 활용(안)>

상품 구분	상품 활용 예시
비전 기반 품질검사	양질의 불량 이미지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공정상 발생하는 다양한 불량 검출
품질 예측	공정간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될 제품의 품질을 예측, 이를 통하여 유기적인 공정 조율을 지원
공정 최적화	공정간 발생하는 데이터와 품질의 관계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 효율 및 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 컨디션을 제안
설비 예지보전	시설, 장비 요소 부품 데이터를 통한 고장 진단 및 교환 주기 예측
노하우 정형화	고숙련자들의 작업정보 및 설비 운영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노하우 제시
공장 운영 지원	솔루션(MES, ERP등) 최적화 알고리즘이 반영된 분석모델 개발
AI 솔루션 모듈화	데이터 분석 후 AI 적용을 통한 학습모델을 오픈 API 형태의 서비스로 개발

② 제조데이터 컨설팅

- 제조데이터 개요, 데이터수집 및 관리체계, 활용방안, 거래시스템
 사용 등 제조데이터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 (전문가 매칭) 제조데이터 컨설팅 신청기업에 1:1 전문가 매칭
 - (기본 교육) 제조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교육
 - (제도교육) 제조데이터 거래유형, 계약·절차, 시스템 등 디지털 자산으로서 제조데이터 거래를 위한 제도적 교육
 - (컨설팅) 제조데이터 활용 및 상품화 등 가치 창출을 위한 컨설팅
 - * 컨설팅 세부 내용은 변동이 가능하며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및 참여형태
○ (상품가공)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① 단독 참여 또는 ② 가공기업과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제조데이터 가공기업 Pool 상세 목록은 <별첨> 참조
○ (컨설팅) 제조데이터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제외 사항
1.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최근 결산 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미해당 6. 제재처분 조치 기간 중인 기업의 경우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품가공) ' 25년 4월 29일(화) ~ 5월 28일(수) 17시까지
○ (제조데이터 커섴팅) '25년 4월 29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서류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점 관련 각종 증빙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과제신청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지원기업 아이디로 신청)

* 시스템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사업관리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필수	해당시
1	사업계획서	0	
2	지원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빌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0	
3	지원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0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0	
5	공장등록증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0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0	
7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국세청 발급)	0	
8	컨소시엄 확약서 1부		0
9	가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0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제조데이터 컨설팅 >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필수	해당시		
1	제조데이터 컨설팅 신청서	0			
2	지원기업 또는 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0			
3	지원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0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0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0			

^{*} 관련 양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지원선정 절차 및 기준

□ 지원절차

①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② 제조데이터 컨설팅

① 사업공고		② 수시 신청·접수 (요건검토)		③ 전문가 매칭	 ④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7	지원기업 (운영기관)	7	운영기관	운영기관

- * 별도 선정평가는 진행하지 않으며, 예산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선정절차(지원과제 수 등 절차 변동가능)
 - \circ $^{\textcircled{1}}$ 요건검토 ightarrow $^{\textcircled{2}}$ 선정평가 ightarrow $^{\textcircled{3}}$ 현장확인 ightarrow $^{\textcircled{4}}$ 최종선정
 - ① (요건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기본 자격요건을 확인
 - ② (선정평가) 요건검토 통과 과제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기반의 선정 평가를 통해 지원 적정성을 평가
 - 평가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산술평점을 토대로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 과제를 선정

<선정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사업,이해	•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성과의 객관성	10	
사업 이해 및 필요성 (20)	• 제조데이터 현황 및 상품화 가능성의 타당성	10	
	∘ 제조데이터 수집, 추출, 확보, 저장 방안의 적절성	10	
사업 수행 공정 및 수행 방안 (30)	• 제조데이터 가공(정제, 전처리) 방안의 적절성	10	
(30)	• 제조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의 적절성	10	
수행 결과물 및 상품화	∘ 제조데이터 상품화 목표 제시의 적정성	15	
수행 결과물 및 상품화 (30)	• 제조데이터 상품판매 등 사업화 방안의 적절성	15	
픗롧젝틃	· 사업수행 일정 및 과업 범위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수행능력 (20)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과 참여 인력의 적정성	10	
합계			

- 아래항목 해당 시 선정평가 가점 반영

	가점 항목	배점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 (3)	∘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 에서 제조데이터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기업(공고일 기준)	3

- ③ (현장확인) 선정된 지원과제의 사업계획서와 현장 일치 여부 확인
 - 현장확인 결과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내용에 '부'가 없으며, 가점 여부를 고려한 최종 선정평가 점수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 선정

< 현장확인 항목 >

확인 항목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지원기업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제조데이터 현황 및 조건 등 일치 여부	적/부	
 . _	∘ 제시된 제조데이터 보유 이상 유무	적/부	

○ 기타사항

- 가공지원을 통해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은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원기업의 인력 인건비를 기업부담금 90% 이내(최대 1,125만원*)에서 현물로 사업비에 포함 가능
- ※ 예시) 총과제비 6,250만원의 경우 정부지원금 5,000만원(80%), 기업부담금은 1,250만원(20%)인력 인건비는 기업부담금 1,250만원의 90%인 1,125만원 이내에서 포함 가능
-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
- ※ 지원기업 단독으로 사업 참여 시 현물 인건비는 사업비에 책정 불가
- ※ 현금 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별도
- 정부지원금은 원가계산 후 예산,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조데이터 컨설팅(수시)에 지원하여 완료한 기업은 차년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참여 시 우대 예정
 - * '26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의 개편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편과 무관하게 '25년 제조데이터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기업 우대사항 유지

6. 문의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문의	전담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41
사업진행 문의	운영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76

☞ 관련 웹사이트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별첨. 가공기업 Pool 상세내역 1부. 끝.